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0-53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「인터넷우표 시험적서비스」를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10년 9월 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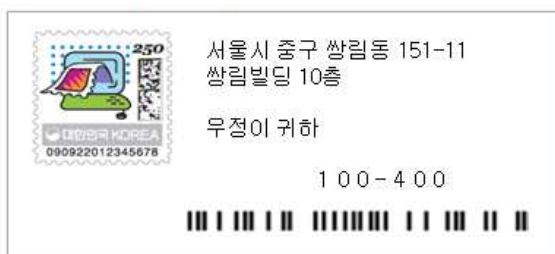
우정사업본부장

인터넷우표 판매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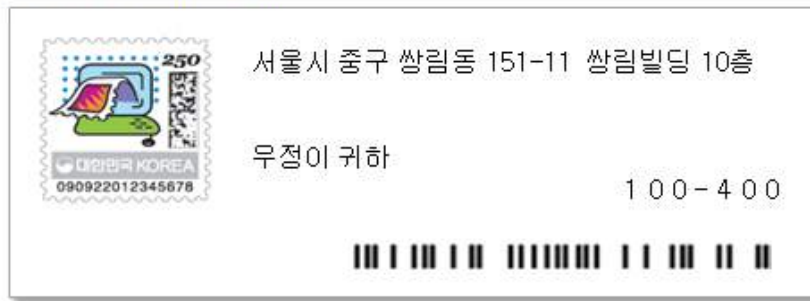
1. 인터넷우표 판매

- 가. 판매가격 :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통상우편물의 요금을 적용함
- 나. 교환가능 여부 : 미사용 인터넷우표는 다른 이용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므로 우표류 교환 대상에서 제외함
- 다. 사용유효기간 : 국가기관이 아닌 이용자의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므로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, 장기 보관에 따른 훼손 우려가 있어 출력일 포함 1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
- 라. 판매형태(우표 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음)

① 라벨12 <100mm × 45mm >



② 라벨 6 < 119.3mm × 42.8mm >



③ 봉투제작용



④ A4 서류봉투용 : 가로 297mm × 세로 210mm



2. 이용방법

가. 신청 :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kr)에 접속하여 보내는사람·받는

사람 주소와 발송우편물에 해당하는 중량 등을 입력하여 신청함

나. 요금결제 : 우편물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인터넷우체국 결제 수단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을 이용하여 결제함

다. 출력 : 구매한 인터넷우표는 이용자의 프린터로 출력함. 다만, 우체국 전산망 또는 프린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출력된 경우와 사용유효기간이 경과된 인터넷우표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재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

라. 부착위치

1) 라벨형태인 경우 : 우편물의 오른쪽 하단(수취인 주소 위치)에 출력된 형태로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이미지만 오려서 사용할 수 없음

2) 라벨형태가 아닌 경우 : 봉투제작용과 서류봉투용은 출력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

마. 우편물 접수 : 일반우편물은 우체통에 투함하며, 등기우편물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바. 수취인 주소 변경 : 인터넷우표 첨부우편물은 수취인 주소·성명을 변경할 경우 2차원 바코드 정보와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변경 불가함.

부 칙

이 공고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0-33호는 폐지한다.